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조인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774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3. 25.

발 의 자 : 조인철 · 박희승 · 이정문
정준호 · 민형배 · 박균택
한정애 · 어기구 · 이정현
양부남 · 이해민 · 조계원
허영 · 정진욱 · 박용갑
김현 · 최혁진 · 안도걸
서삼석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일정 한도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그런데 답례품의 종류가 지역특산품, 지역사랑상품권 등 ‘물품’에 한정되어 있어, 공공시설·숙박시설 등 이용권이나 관련 서비스를 직접 기부자에게 답례로 제공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답례품의 범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·숙박시설 등 이용권 및 관련 서비스를 명시함으로써,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한 답례품을 설계하여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함(안 제9조 제2항제2호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“제2항제2호에”를 “제2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2에”로 한다.

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·민간시설·숙박 시설·교육시설·체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답례품의 제공) ① (생략)	제9조(답례품의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	②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2의2.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 공공시설·민간시설·숙박시설·교육시설·체험시설 이용권 또는 관련 서비스</u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.
1. 2. (생략)	1. 2. (현행과 같음)
3. <u>제2항제2호에</u>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	3. <u>제2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2에</u> -----
4. (생략)	4. (현행과 같음)